

서울특별시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6년 10월 13일
제 안 자 : 행정보건위원장

1. 제안경위

- 2006년 10월 10일 고문식의원, 이혜경의원의 서면동의 발의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(2006. 10.13)에 상정·심사한 결과 행정보건위원회안으로 채택 함.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예우(안 제3조)

1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2.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3. 기타 재향군인의 궁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

나.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(안 제4조)

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.

다. 지원신청 및 보고(안 제5조)

-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
- “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”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여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함.

4. 참고사항

- 국가보훈기본법
-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
-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

서울특별시 중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-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서울 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
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- 기타 재향군인의 궁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)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.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-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【 관계법령 】

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

제6조 (조직) ①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,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에 시·도회를,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 <개정 1997.1.13>
[전문개정 1992.12.2]

제16조 (재정)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·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. <개정 1992.12.2>
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24>
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1997.12.24>

중구보조금관리조례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3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4일 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1.05.18)
②공공기관,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제19조 (예우 및 지원의 실시)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) ①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